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0
----------	-----

2016. 6. 9.(목)  
건설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병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6년 6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6월 9일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병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15. 1.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내용 추가(안 제1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정지원 대상 사업 추가(안 제3조제1항제3호)
-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법률 제12378호로 '14.1.28.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15.1.29.일자로 시행되어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현행 조례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재정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15.12.31.일자로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수사업자”를 “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을 “”여객자동차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6호”를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를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의”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4조제1항”을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후단 중 “영 제40조”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버스지원 심의위원회”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버스지원”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제24조 중 “때에는 지체 없이”를 “때에는”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u>운수사업자</u>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u>영</u>"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p> <p>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u>법</u>"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 ----- <u>운수사업자</u> 및 「<u>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u>」 제7조 제1항에 따른 <u>택시운송사업자</u>-----.</p> <p>제2조(정의) ----- -----.</p> <p>1. ----- "<u>여객자동차법</u> 시행령"----- ----- ----- ----- ----- ----- ----- ----- -----.</p> <p>2. ----- ----- ----- "<u>여객자동차법</u>"----- ----- -----.</p>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4. · 5. (생략)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따라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 바. (생략)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 마. (생략)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6호-----  
-----.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  
-----  
-----  
----- 필요한 자금 -----  
-----.  
-----

1.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  
-----  
-----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도지사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사업

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  
-----  
-----  
-----.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  
-----  
-----  
--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  
-----  
-----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송원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략)
5. 차량감가상각비. 이 경우 차량 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 시 발생하는 수입금과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6. ~ 11. (생략)

②·③ (생략)

제3장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

-----.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  
-----  
-----  
-----  
-----.

6.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  
-----.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제24조(사업의 실적보고) -----  
-----  
-----  
-----  
-----  
-----  
-----.

## 관 계 법 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